

■ 참고자료 ■

수익자 총수 1인인 펀드의 해지 · 보고의무의 근거 및 해당 펀드를 해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

자본시장법	자본시장법 시행령	금융투자업규정
<p>제192조(투자신탁의 해지)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<u>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u></p> <p>제6조(금융투자업)</p> <p>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금전 등을 그 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·처분,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그 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는 집합투자자로 본다.</p> <p>1. 「국가재정법」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(이에 준하는 외국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)</p> <p>2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업</p>	<p>제224조의2(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) 법 제192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 <p>1. 수익자가 법 제6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인 경우</p> <p>1의2. 수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투자구조, 관리주체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</p> <p><u>가. 「사립학교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</u></p> <p><u>나. 「공익법인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</u></p> <p><u>다.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</u></p> <p><u>라. 제10조제3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</u></p> <p><u>마. 그 밖에 자금 운용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</u></p> <p>1의3. 수익자가 제1호의2에 따른 투자신탁인 경우</p> <p>1의4. 수익자가 제231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인 경우</p> <p>2. 삭제 &lt;2018.9.28.&gt;</p>	<p>제7-11조의2(의무해지가 면제되는 투자신탁의 요건) ① &lt;삭제 2018. 9. 28.&gt;</p> <p>② 영 제224조의2제1호의2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1. 금융투자업자 또는 법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영 제224조의2 제1호의2 각 목에 해당하는 수익자(이하 이 항에서 “수익자”라 한다)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자금의 통합운용에 대한 별도의 승인을 받아 직접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를 선임하여 설정한 투자신탁일 것</p> <p>2. 수익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것</p> <p>③ 영 제224조의2제1호의2마목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”란 영 제10조제2항제9호 및 제10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자본시장법 제10조(전문투자자의 범위 등)</p>

자본시장법	자본시장법 시행령	금융투자업규정
<p>협동조합중앙회</p> <p>3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</p> <p>4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</p> <p>5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</p> <p>6.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산림조합</p> <p>7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</p> <p>8.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관한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</p> <p>9. 제25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</p> <p>10.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</p> <p>가. 공제조합</p> <p>나. 공제회</p> <p>다.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·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,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</p> <p>11. 그 밖에 제7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자로부터 금전등을 모아 설립한 기구 또는 법인 등으로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투자구조, 관리주체 등 대통령령(*참고: 하위시행령 없음)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</p>	<p>3. 투자신탁이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</p> <p><b>4. 투자신탁의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</b></p> <p>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(집합투자의 적용배제)</p> <p>⑥ <b>법 제6조제6항제10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b></p> <p>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회 또는 공제조합</p> <p>가. 「경찰공제회법」에 따른 경찰공제회</p> <p>나. 「과학기술인공제회법」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</p> <p>다. 「교정공제회법」에 따른 교정공제회</p> <p>라. 「군인공제회법」에 따른 군인공제회</p> <p>마. 「대한소방공제회법」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</p> <p>바. 「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」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</p> <p>사. 「한국교직원공제회법」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</p> <p>아. 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</p> <p>자. 「전기공사공제조합법」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</p> <p>2.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운용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공제회 또는 공제조합</p>	<p>② 법 제9조제5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. (중략)</p> <p><b>9. 증권금융회사</b></p> <p>③ 법 제9조제5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 다만,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. (중략)</p> <p><b>5. 협회</b></p> <p><b>6.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(이하 “예탁결제원”이라 한다)</b></p> <p><b>6의2.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(이하 “전자등록기관”이라 한다)</b></p> <p><b>7. 거래소</b></p>